

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5. 9. 23.>

**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**(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)

(단위: 억원)

| 인가업무<br>단위 | 금융투자업의<br>종류         |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            | 투자자의 유형          | 최저자기<br>자본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-1-1  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500        |
| 1-1-2  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250        |
| 1-11-1 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200        |
| 1-11-2 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100        |
| 1-111-1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및 특<br>수채증권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75         |
| 1-111-2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및 특<br>수채증권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37.5       |
| 1-12-1 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지분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<br>외한다)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250        |
| 1-12-2 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지분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<br>외한다)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125        |
| 1-13-1 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50         |
| 1-13-2 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25         |
| 11-1-1  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200        |
| 11-1-2  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100        |
| 11-11-1 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80         |
| 11-11-2 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40         |
| 11-111-1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및 특<br>수채증권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30         |
| 11-111-2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및 특<br>수채증권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15         |
| 11-112-1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사채권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40         |
| 11-112-2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사채권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20         |
| 11-12-1 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지분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<br>외한다)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100        |
| 11-12-2 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지분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<br>외한다)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50         |
| 11-13-1 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20         |
| 11-13-2   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은 제외한다) |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10         |
| 11r-1r-1   | 투자매매업(인수             |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         | 60         |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| 업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    |
| 12-112-1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만 해당한다) | 사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60  |
| 12-112-2 | 투자매매업(인수<br>업만 해당한다) | 사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30  |
| 1-2-1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내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100 |
| 1-2-2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내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50  |
| 1-21-1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내파생상품(주권을 기초자<br>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50  |
| 1-21-2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내파생상품(주권을 기초자<br>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25  |
| 1-3-1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외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900 |
| 1-3-2 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외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450 |
| 1-31-1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외파생상품(주권을 기초자<br>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450 |
| 1-31-2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외파생상품(주권을 기초자<br>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225 |
| 1-32-1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외파생상품(주권 외의 것<br>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<br>해당한다)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450 |
| 1-32-2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외파생상품(주권 외의 것<br>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<br>해당한다)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225 |
| 1-321-1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외파생상품(통화·이자율<br>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<br>해당한다)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180 |
| 1-321-2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장외파생상품(통화·이자율<br>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<br>해당한다)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90  |
| 1a-1-2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<br>제7조의3제1항제1호·제4<br>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300 |
| 1a-4-2   | 투자매매업                |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<br>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<br>품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150 |
| 2-1-1    | 투자중개업               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40  |
| 2-1-2    | 투자중개업               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20  |
| 2r-1-2   | 투자중개업               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5   |
| 2l-1-1   | 투자중개업               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10  |
| 2l-1-2   | 투자중개업                | 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5   |
| 2-11-1   | 투자중개업                | 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<br>전문투자자 | 10  |
| 2-11-2   | 투자중개업                | 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   | 5   |

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2-12-1  | 투자중개업 | 지분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10  |
| 2-12-2  | 투자중개업 | 지분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5   |
| 2-13-1  | 투자중개업 |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10  |
| 2-13-2  | 투자중개업 |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5   |
| 2-14-1  | 투자중개업 | 수익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10  |
| 2-14-2  | 투자중개업 | 수익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5   |
| 2-2-1   | 투자중개업 | 장내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20  |
| 2-2-2   | 투자중개업 | 장내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10  |
| 2-21-1  | 투자중개업 | 장내파생상품(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10  |
| 2-21-2  | 투자중개업 | 장내파생상품(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5   |
| 2-3-1   | 투자중개업 | 장외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100 |
| 2-3-2   | 투자중개업 | 장외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50  |
| 2-31-1  | 투자중개업 | 장외파생상품(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50  |
| 2-31-2  | 투자중개업 | 장외파생상품(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25  |
| 2-32-1  | 투자중개업 | 장외파생상품(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50  |
| 2-32-2  | 투자중개업 | 장외파생상품(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25  |
| 2-321-1 | 투자중개업 | 장외파생상품(통화·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20  |
| 2-321-2 | 투자중개업 | 장외파생상품(통화·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10  |
| 2a-1-2  | 투자중개업 |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·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| 전문투자자         | 200 |
| 2a-4-2  | 투자중개업 |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100 |
| 2o-12-1 | 투자중개업 | 지분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60  |
| 2o-12-2 | 투자중개업 | 지분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30  |
| 2o-14-1 | 투자중개업 | 수익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60  |

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2o-14-2  | 투자중개업 | 수익증권(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30  |
| 2i-11-2i | 투자중개업 | 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30  |
| 3-1-1    | 집합투자업 |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80  |
| 3-11-1   | 집합투자업 | 법 제229조제1호·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40  |
| 3-12-1   | 집합투자업 |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20  |
| 3-13-1   | 집합투자업 |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20  |
| 4-1-1    | 신탁업   |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250 |
| 4-1-2    | 신탁업   |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| 전문투자자         | 125 |
| 4-11-1   | 신탁업   |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           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130 |
| 4-11-2   | 신탁업   |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            | 전문투자자         | 65  |
| 4-12-1   | 신탁업   |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120 |
| 4-12-2   | 신탁업   |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| 전문투자자         | 60  |
| 4-121-1  | 신탁업   |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|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| 100 |
| 4-121-2  | 신탁업   |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| 전문투자자         | 50  |

#### 비고

1.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-1-1 또는 1-1-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-3-1 또는 1-3-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
2. 1-11-1, 1-11-2, 1-111-1, 1-111-2, 1-12-1, 1-12-2, 1-13-1, 1-13-2, 11-11-1, 11-11-2, 11-111-1, 11-111-2, 11-112-1, 11-112-2, 11-12-1, 11-12-2, 11-13-1, 11-13-2, 12-112-1, 12-112-2, 2-11-1, 2-11-2, 2-12-1, 2-12-2, 2-13-1, 2-13-2 및 2i-11-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.
3. 11r-1r-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.
4. 2r-1-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, 전문투자자는 제7

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5. 1a-1-2, 1a-4-2, 2a-1-2 및 2a-4-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.
6. 2i-11-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,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7. 2-1-1 및 2-1-2는 법 제78조,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, 2-11-1 및 2-11-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, 2-12-1 및 2-12-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, 2-14-1 및 2-14-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.
8.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-13-1 및 11-13-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.
9.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(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10. 삭제 <2015.10.23.>
11. 삭제 <2015.10.23.>
12.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
13. 1a-1-2, 1a-4-2, 2a-1-2 및 2a-4-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채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.
14.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-1-1, 3-11-1, 3-12-1, 3-13-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.
15.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-121-1 및 4-121-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
16. 2l-1-1 및 2l-1-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(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주는 것을 말한다)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
17. 2o-12-1, 2o-12-2, 2o-14-1 및 2o-14-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.